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7321 판결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6. 5. 18.

판결 선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운행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소외회사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오던 중, 2015. 2. 23. 원고에게 대금 3,250만 원에 그 운행권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2015. 3. 1. 소외 회사와 차량운행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 사정상 작업일(휴일또는 휴일 대체된 공장 휴무일을 제외한 전 조업일)에 한하여 매일 출근 2회, 퇴근 2회 총 4회를 운행한다. 단, 소외 회사의 사정에 따라 4회 이외의 추가운행 혹은 단축운행을 명할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통근버스 운행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일요일과 공휴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한 달에 2회 정도 운행한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가 통근버스를 운행할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에 토요일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일요일 아침에 1회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소외 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즉 출근을 위한 운행 2회, 퇴근을 위한 운행 2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도태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통근버스 운행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요일 오전에는 예외 없이 출퇴근을 시켜주기 위한 운행을 하여야 하고, 일요일 '오전'에 월 2회 정도 야간근무자들을 퇴근시켜 주기 위해 운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렇지않더라도 일요일 오전에 예외 없이 통근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작위 또는 묵시적인 기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휴식을 위하여, 월 2회 정도만 운행을 하면 된다는 점 때문에, 피고로부터 통근버스의 운행권을 매수한 것이지, 일요일 오전에도 예외 없이 운행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이에 원고는 통근버스의 운행권을 타인에게 2,00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차액상당인 1,25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4) 이러한 손해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일요일 '오전'에 월 2회 정도만 야간근무자들을 퇴근시켜 주기 위해 운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사실은 대부분의 일요일 오전에, 토요일 야간근무를 한 직원들의 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요일과 공휴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한 달에 2회 정도 운행한다'고 말하였을 뿐, 대부분의 일요일 오전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또는 묵시적이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즉 출근을 위한 운행 2회, 퇴근을 위한 운행 2회)를 염두에 두고 '통상 한 달에 2회 정도 운행한다'고 말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으로 근무조건은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차량운행위탁 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위 계약에 따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회사의 공장 사정상 작업일(휴일 또는 휴일 대체된 공장 휴무일을 제외한 전 조업일)에 한하여 매일 출근 2회, 퇴근 2회 총 4회를 운행한다. 단, 소외 회사의 사정에 따라 4회 이외의 추가운행 혹은 단축운행을 명할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일요일 근무횟수가 통근버스 운행권 매수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주 일요일은 통근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통상 한 달에 2회 정도 운행한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적극적인 또는 묵시적이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